제32회

기본과정 (1주차)

상담 🌣 02) 2135-1806

공인중개시법령 및 실무



- 01.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,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제20회 변형) (0, X)
- 02.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, 부동산중개의 건전한 육성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한 다. (제20회 변형) (0, X)
- 03. 이 법상, '중개'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·교화·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. (제29회 변형) (0, X)
- 04. 이 법상 '중개업'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유롭게 약정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. (제22회)(제29회 변형) (0, X)
- 05. 이 법상, "중개업"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. (제28회) (0, X)
- 06. 이 법상, '공인중개사'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,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(제22회) (0, X)
- 07.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'공인중개사'로 본다. (제26회)(제28회)(0,X)
- 08. 이 법상, '개업공인중개사'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 (제22회 변형) (0, X)
- 09.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'개업공인중개사'가 아니다. (제24 회) (0, X)
- 10. 이 법상, '소속공인중개사'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,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. (제25회) (0, X)
- 11. 이 법상, '중개보조원'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,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 (제25회 변형) (0, X)
- 12.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법 률행위이다. (제20회 변형) (0, X)
- 13.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.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(제20회) (0, X)

- 14.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'중개'에 해당한다.(제 25회) (0, X)
- 15. 법정지상권을 "양도(이전)"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'중개'에 해당한다. (제26회) (0, X)
- 16.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. (제22회)(제25회) (0, X)
- 17. 반복,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히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, 중개를 '업'으로 한 것으로 본다. (제26회)(제28회) (0, X)
- 18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,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자가,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. (제22회) (0, X)
- 19.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, '중개업'에 해당하지 않는다. (제25회) (0, X)
- 20.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'대토권'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23회)(제25회)(제28회) (0, X)
- 21.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·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'세차장구조물'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20회)(제25회) (0, X)
- 22. 동·호수가 "특정"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22회)(제23회) (0, X)
- 23. 완성되지는 않았으나, "특정" 동,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 20회) (0, X)
- 24.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. (제20회)(제21회)(제23회) (0, X)
- 25.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. (제21회) (O, X)
- 26.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,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. (제22회) (0,X)
- 27. 영업용 건물의 비품, 영업상의 노하우, 거래처,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28회) (0, X)
- 28.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등기를 하므로,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. (제21회)(제25회) (0, X)
- 29.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므로,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. (제26회 변형) (0, X)

♥수고하셨습니다^^

♥ 2021년 새해 필승합격입니다!!!~~~^^*♥

```
01-0 //
02-X //
03-X ("대행"이 아니라, "알선"하는 것을 말한다) //
04-X ("일정한" 보수를 받고, 중개를 "업으로" 행하는 것을 말한다) //
05-X (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) //
06-X (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) //
07-X (이 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) //
08-X (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) //
09-0 //
10-0 //
11-X ("단순한 업무"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) //
12-X (중개행위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, "사실행위"에 불과하다) //
13-0 //
14-0 //
15-0 //
16-0 //
17-X (중개업에 해당되려면, 계속`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) //
18-X (중개업에 해당되려면,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) //
19-X (해당한다) //
20-X //
21-X //
22-0 //
23-0 //
24-X (동'호수가 특정(선정)되지 아니한 청약통장은 거래할 수 없으며, 중개대상물에도 해당하지 아니
한다) //
25-X //
26-0 //
27-X (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) //
28-X (선박등기를 하여도 중개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) //
29-X (행정재산은 거래가 되지 아니하므로, 중개대상물이 아니다) //
```

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